WE ARE YOUR DOL



Division of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

뉴욕주 노동부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고충 처리 절차

이 고충 처리 절차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NYS 노동부에서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하려는 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차별에 대한 고용 관련 불만 사항은 NYSDOL 평등 기회 개발과(Division of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에서 제공하는 정책의 다른 곳에서 다룹니다.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불만 제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치, 날짜 및 문제 설명 등 차별 혐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의 특정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만 사항에 대한 개인 인터뷰 또는 테이프 녹음 등 불만 사항 제출물의 대체 수단은 요청 시에 한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고충 제기자 및/또는 그 대리인이 가능한 한 빨리하되 신고된 위반일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Director

NYS Department of Labor Division of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 State Campus, Building 12, Rm. 540 Albany, NY 12226

불만 접수 후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ADA 조정관 또는 그 대리인이 불만 제기자와 가능한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불만 제기자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회의 완료 후 15일 이내에 ADA 조정관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응답하고, 적절한 경우 큰 활자, 점자 또는 오디오 테이프 등 불만 제기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응답을 드리게 됩니다. 응답은 NYS 노동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불만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ADA 조정관 또는 그 대리인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불만 제기자 및/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응답 접수 후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접수 후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회신하고, 해당될 경우 해당 기관의 고소장 최종 합의 또는 추가 조치를 위해 ADA 조정관에게 반환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표시와 함께 고소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응답을 전달합니다. 추가 조치가 표시된 경우, 서면 응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ADA 조정관 또는 그 대리인이 접수한 모든 서면 불만 사항,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이의 제기, 이 두 사무국의 응답은 NYS 노동부에 의해 최소 3년 동안 보관됩니다.